

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5BL ‘엘리프 시흥 더프라임’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.
-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,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)
- `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신청(www.applyhome.co.kr)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-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,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,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.
-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‘신청자격’ 및 ‘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’를 충분히 안내,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

공급내역 및 일정

- **공급위치** :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5BL
- **공급규모** : 아파트 지하 2층 ~ 지상 최고 25층, 4개동 총 338세대 중 공급대상 304세대
- **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배정세대**

구 분		타입	84A	84B	계
기관 추천 특별 공급	장애인	경기도	2 (10)	1 (5)	3 (15)
		서울특별시	2 (10)	-	2 (10)
		인천광역시	1 (5)	-	1 (5)
	국가유공자		5 (25)	1 (5)	6 (30)
	장기복무 제대군인		5 (25)	-	5 (25)
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		5 (25)	1 (5)	6 (30)
	중소기업 근로자		5 (25)	1 (5)	6 (30)
합 계			25 (125)	4 (20)	29 (145)

- ※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작성된 내용으로 면적 및 배정 대상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※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,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.
-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, 본 주택은 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500%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- ※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분양일정

구분	일자	참고사항
입주자모집공고(예정)	2026.10.26.(월)	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
건본주택 개관(예정)	2026.11.06.(금)	건본주택 :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68-7
특별공급 접수일시(예정)	2026.11.09.(월)	인터넷 청약접수(09:00 ~ 17:30)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수 (https://www.applyhome.co.kr) ※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
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(예정)	2026.11.17.(화)	한국부동산원 '청약홈' 홈페이지 (https://www.applyhome.co.kr)
계약 기간	2026.11.28.(토)~11.30(월)	건본주택 :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68-7

- ※ 상기 분양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
 -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에서 신청(국민은행 포함 소 은행)
 -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 -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, 금융인증서, 네이버인증서, KB국민인증서, 토스인증서, 신한인증서,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■ 신청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.
- 청약통장 가입 요건(국가유공자, 장애인 제외, *국외취업(해외건설) 근로자의 경우 아래 별도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 따름)
 -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 - ②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 - ③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㎡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

<청약예금의 예치금액>

구 분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(시흥시 및 경기도)	그 밖의 광역시 (인천광역시)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(서울특별시)
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

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

■ '무주택세대 구성원'의 정의

- 다음 각 목의 사람(세대원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)
 - 가. 주택공급신청자
 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-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
 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)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 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
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'무주택세대구성원'이 아닌 자.
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기관추천,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, 신생아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(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)

■ 당첨자 선정 방법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(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)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수 배정)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
- 당첨자에 대한 동·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
 - ※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,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.
 -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, 특별공급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첨에 의해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의 모집일정에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**해당신청일(특별공급 신청일)에 인터넷 청약 신청**을 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]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**해당신청일(특별공급 신청일)에 인터넷 청약 신청**을 하여야 하며,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(신혼부부, 다자녀, 노부모부양, 생애최초, 신생아)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.
 - 단,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**
-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,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, 일반공급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.
- 공급금액, 전매제한기간, 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**2026.10.26.(월)**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.